



천안의 명당 불당신도시를  
더 가볍게 누리다!

신  
천안불당 아산탕정1-A1블록

# 국민임대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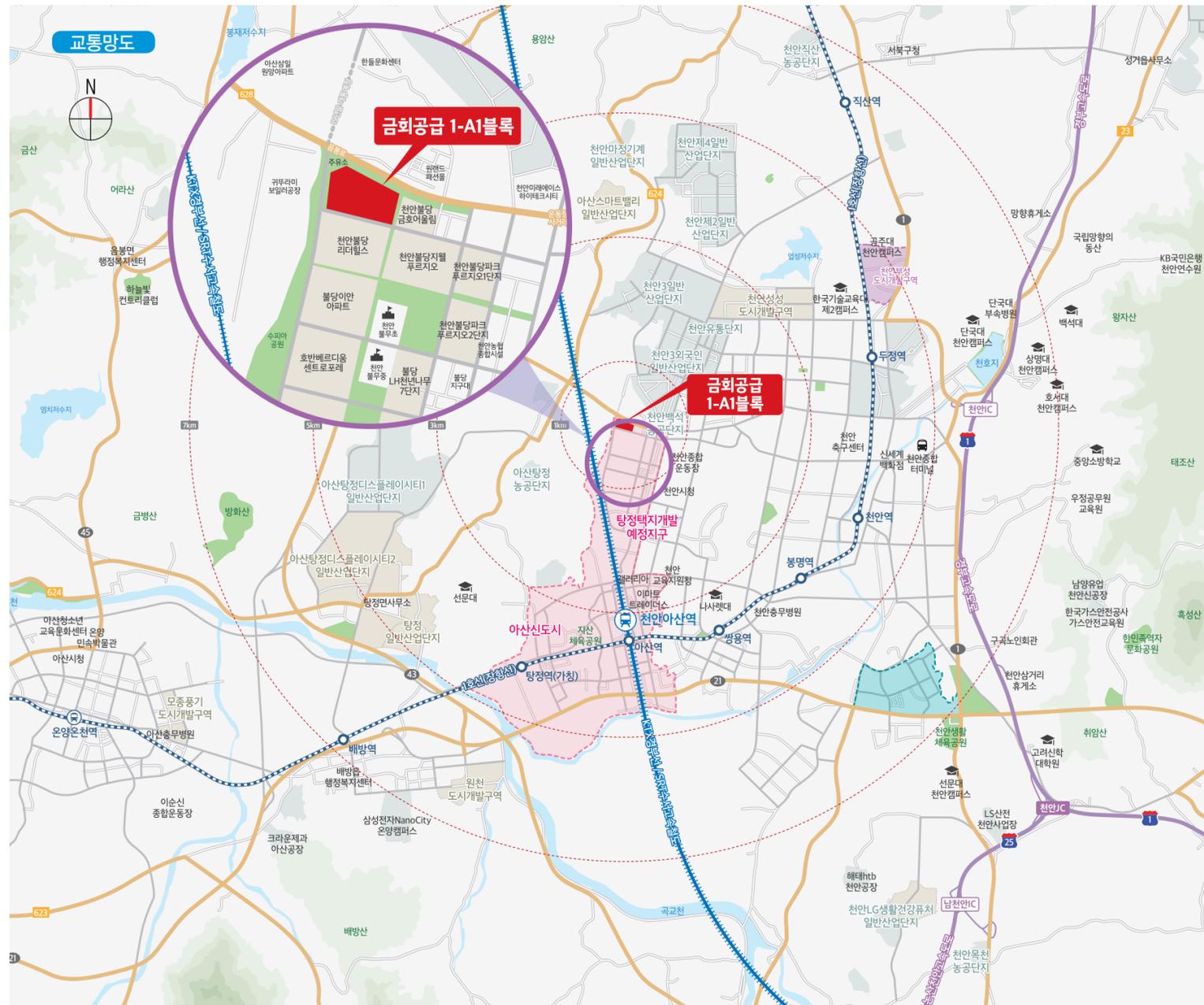
26㎡ · 37㎡ · 46㎡ | 총 406세대



행정, 교통, 교육, 생활, 직주근접까지  
당신이 원해온 인프라  
그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누릴 원더풀 라이프의 시작



천안의 중심 불당을 누리다!  
천안신분당 국민임대주택(아산탕정1-A1블록)



▲KTX 천안아산역 ▲갤러리아 백화점 ▲천안시청

토지이용계획도



ONE  
거리 빠른교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갖춘 교통의 메카  
약 3km거리에 KTX · SRT 천안아산역, 1호선 아산역 위치  
KTX · SRT 이용 시 서울까지 약 30분대 접근

ONE  
스톱 쾌적생활

천안시청과 인접한 천안의 새중심지!  
천안시청, 천안종합운동장, 중심상권과 가까운 쾌적 생활권  
갤러리아백화점, 펜타포토몰, 대형할인마트 등 최상의 쇼핑 인프라

ONE  
스텝 우수교육

도보통학 거리에 초 · 중학교 위치  
안심하고 자녀 교육할 수 있는 우수교육환경  
불당지역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인프라 공유

ONE  
더블 출근환경

천안일반산업단지,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  
충남천안교육지원청, 상공회의소, 근로복지공단 등  
가깝고 편리한 출퇴근 환경으로 삶의 질 향상

※ 본 교통망도, 이미지 및 토지이용계획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교통망도는 관계기관의 인 · 허가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토지이용계획도,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천안 도심 속에 자리 잡아 살기 좋기로 유명한 이곳  
마음의 여유까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 이곳이 천안신불당 국민임대주택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바람의 소통을 고려한 단지배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설계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생활편의시설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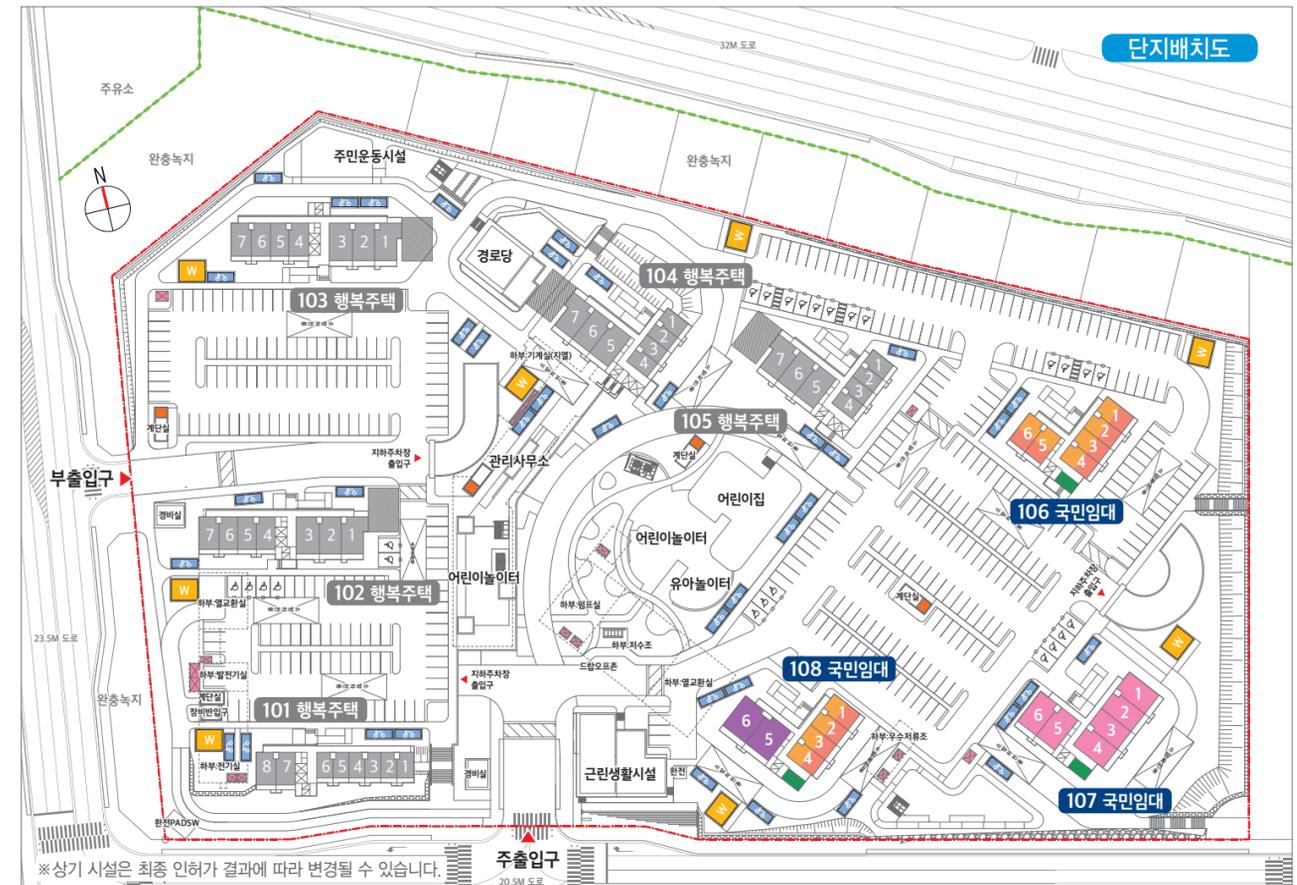


▲ 이미지컷



단지조감도

범례 | --- 단지경계 ▶ 출입구 W 옥외쓰레기수거함 상하수 자전거보관소 환기구(D.A) 아파트엘리베이터 외부엘리베이터 방음벽 행복주택



단지배치도

천안신불당 아산탕정1-A1블록 총 1,146세대 [ 국민임대주택 406세대(금회공급) | 행복주택 740세대(별도공급) ]

국민임대주택	26	234세대 (주거약자용 30세대)	37	132세대	46	40세대	행복주택	740세대
--------	----	-----------------------	----	-------	----	------	------	-------

\*아산탕정1-A1블록은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혼합단지입니다.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901	902	903	904	905	906
801	802	803	804	805	806
701	702	703	704	705	706
601	602	603	604	605	606
501	502	503	504	505	506
401	402	403	404	405	406
301	302	303	304	305	306
201	202	203	204	205	206
101	102	103	104	105	106
26(주거약자용 포함)					
106동 150세대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901	902	903	904	905	906
801	802	803	804	805	806
701	702	703	704	705	706
601	602	603	604	605	606
501	502	503	504	505	506
401	402	403	404	405	406
301	302	303	304	305	306
201	202	203	204	205	206
101	102	103	104	105	106
37					
107동 132세대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901	902	903	904	905	906
801	802	803	804	805	806
701	702	703	704	705	706
601	602	603	604	605	606
501	502	503	504	505	506
401	402	403	404	405	406
301	302	303	304	305	306
201	202	203	204	205	206
101	102	103	104	가정어린이집(예정)	
26(주거약자용 포함)					
108동 124세대					

\*108동의 5·6호리인 1층세대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주택으로 공급하지 않습니다.

\*본 단지조감도, 이미지컷 및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의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26

234세대 (주거약자용 30세대 포함)

주택 면적	
주거 전용	26,4800 m <sup>2</sup>
주거 공용	16,4341 m <sup>2</sup>
지하주차장	9,6788 m <sup>2</sup>
기타 공용	1,9284 m <sup>2</sup>
계약 면적	54,5213 m <sup>2</sup>

실별 면적	
거실/침실	14.17 m <sup>2</sup>
주방/식당	6.89 m <sup>2</sup>
욕실	3.05 m <sup>2</sup>
현관	2.37 m <sup>2</sup>

발코니 면적	
발코니계	6.50 m <sup>2</sup>



**주거약자용 세대 내 편의시설 (1~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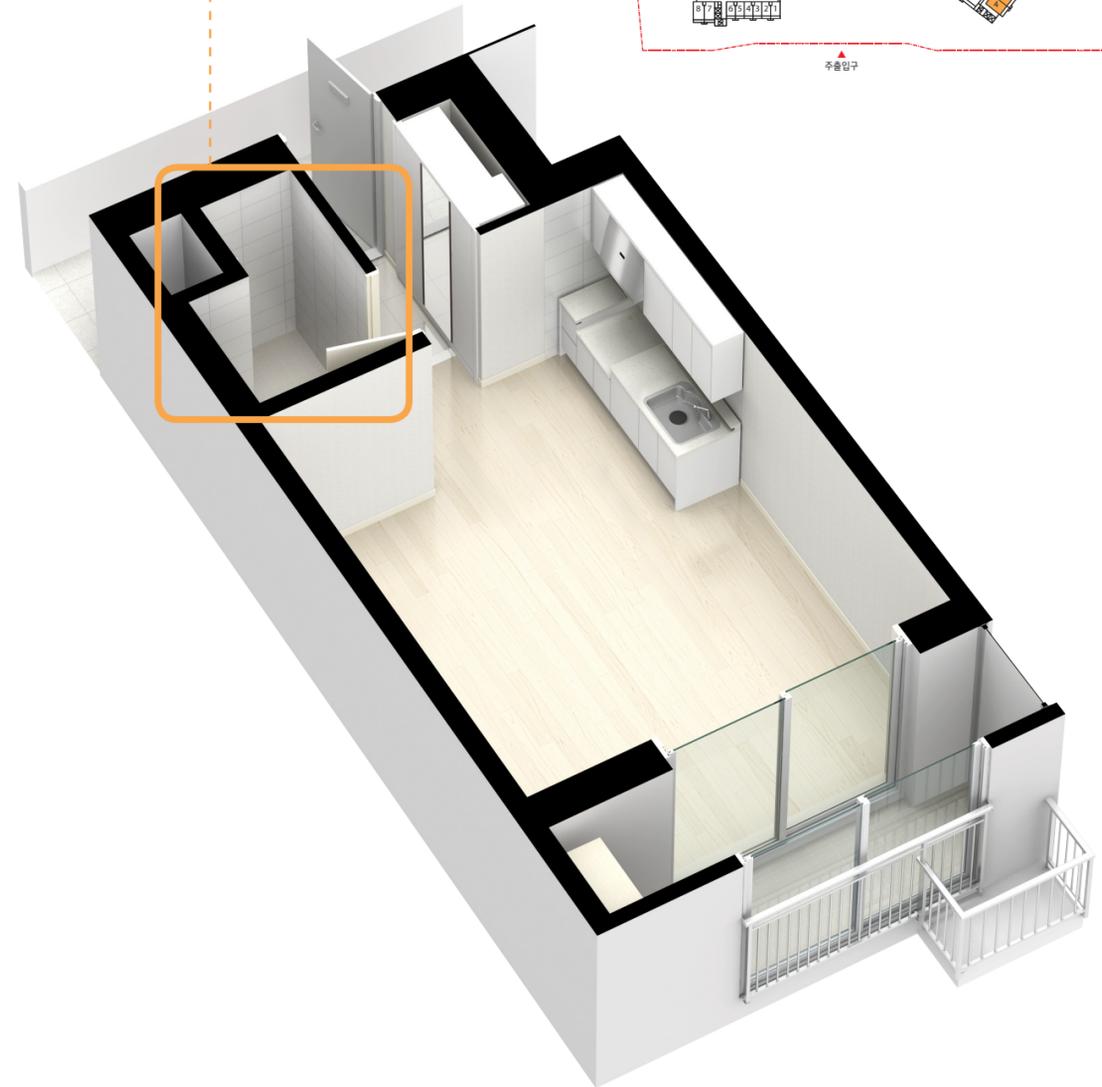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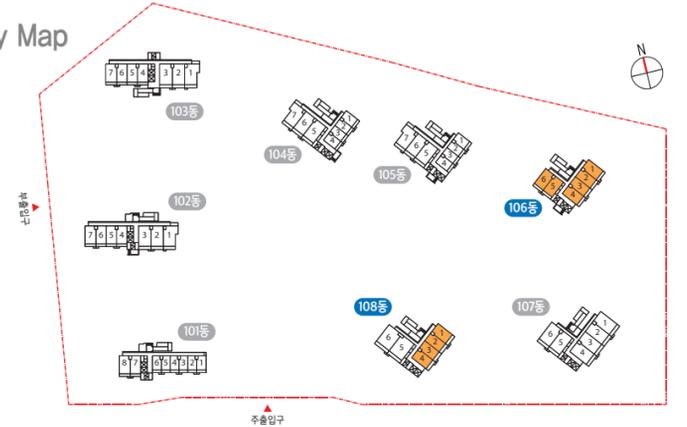
- 외여닫이 욕실문
- 욕실 손잡이
- 현관 손잡이



▼주거약자용(1~3층)



Key Map



※ 세대평면도 및 아이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평면도 및 아이소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치수입니다. (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끝선 기준임)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sup>2</sup>로 표기하였습니다. (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sup>2</sup>X0.3025=평) ※ 발코니는 경량칸막이(비상탈출구)로 시공예정입니다.(일부 타입 제외) ※ 신발장 후면에 전기단자함으로 인해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접수받으며, 동호배정은 주택형내에서 항별·층별·구분 없이 전산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1층 발코니 난간대는 유공판으로 시공됩니다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형 37

132세대

## 주택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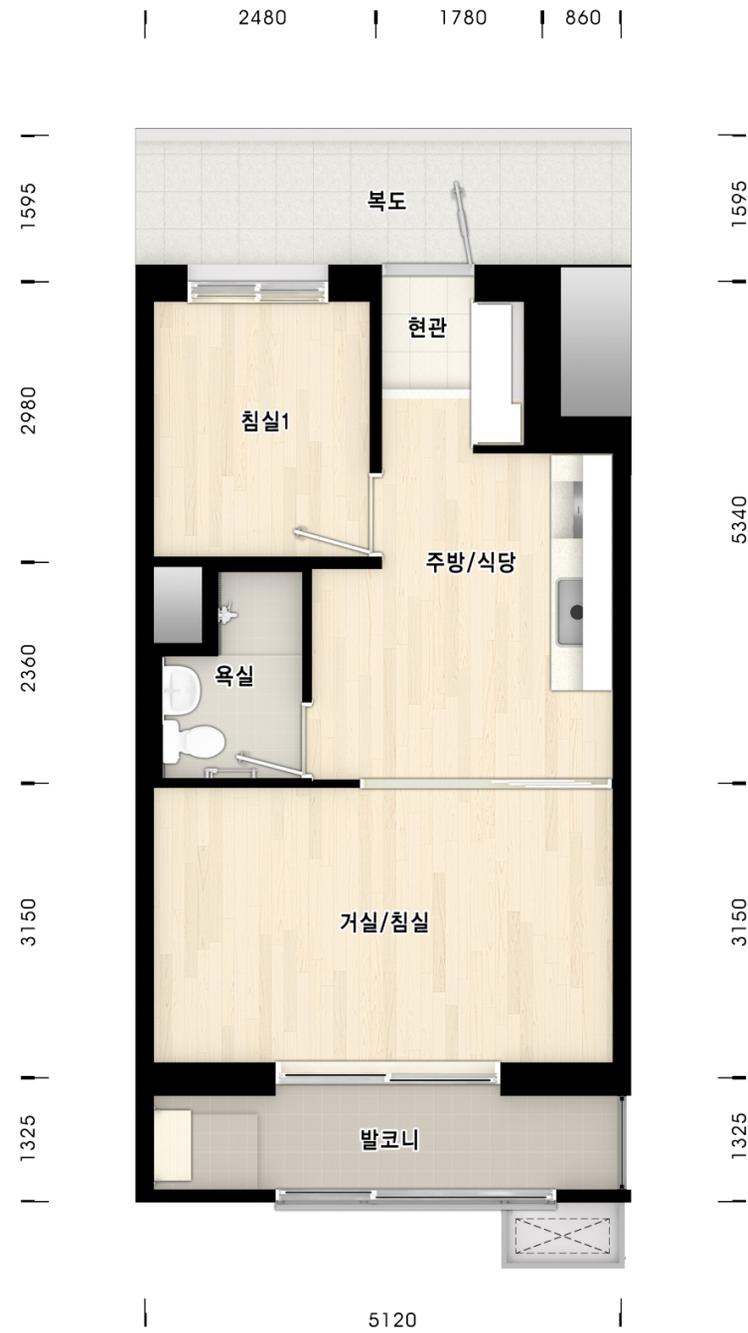
주거 전용	37,2500 m <sup>2</sup>
주거 공용	23,1183 m <sup>2</sup>
지하주차장	13,6155 m <sup>2</sup>
기타 공용	2,7127 m <sup>2</sup>
계약 면적	76,6965 m <sup>2</sup>

## 실별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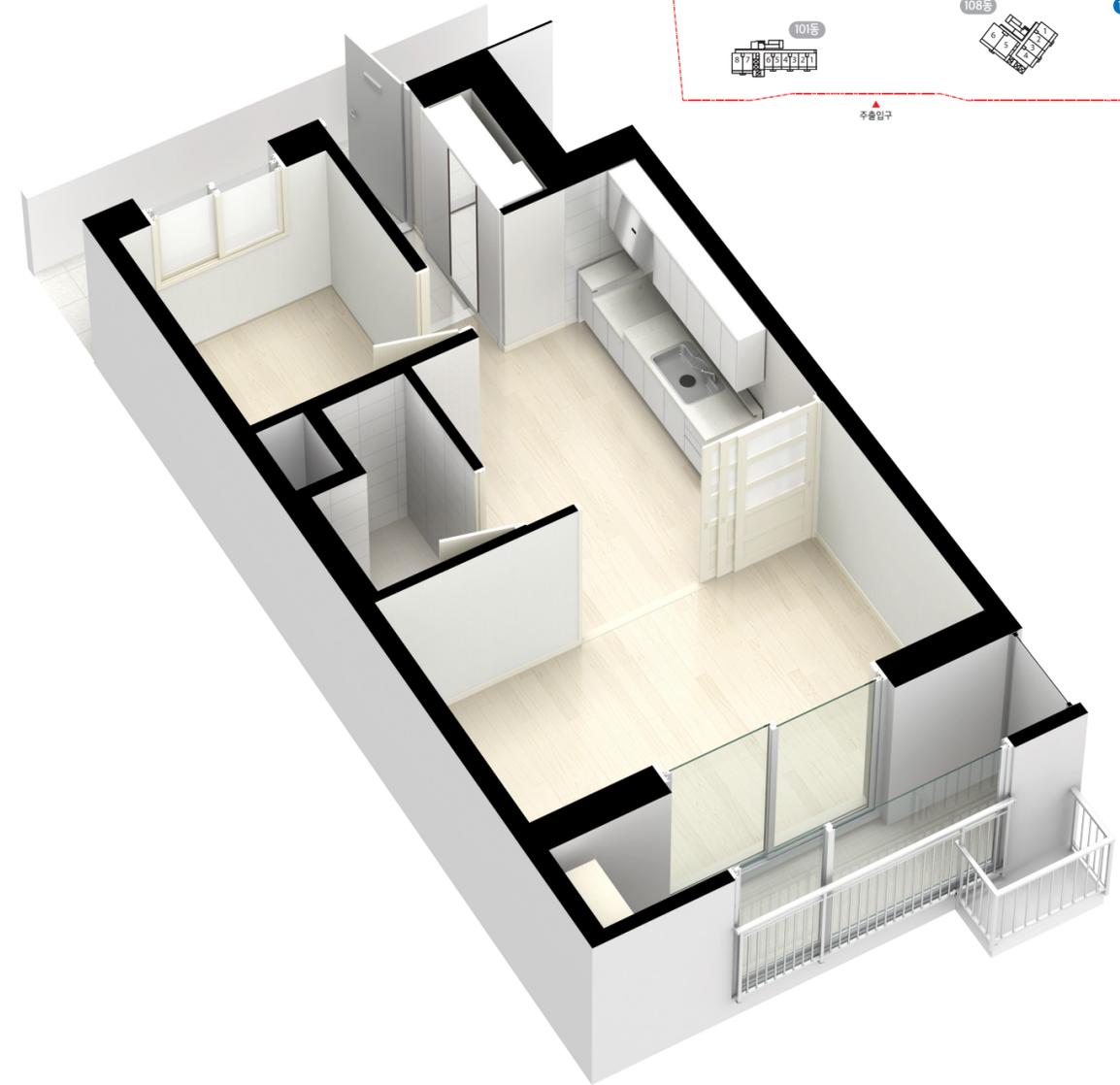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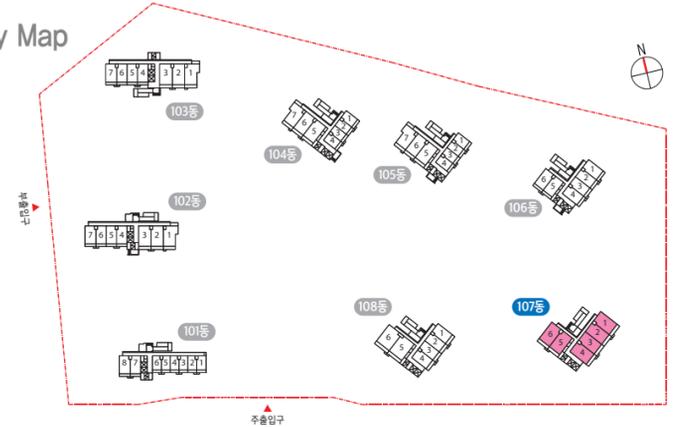
거실/침실	14.51 m <sup>2</sup>
주방/식당	10.6 m <sup>2</sup>
욕실	3.08 m <sup>2</sup>
현관	2.54 m <sup>2</sup>
침실 1	6.52 m <sup>2</sup>

## 발코니 면적

발코니계	7.56 m <sup>2</sup>
------	---------------------



Key Map



※ 세대평면도 및 아이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평면도 및 아이소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치수입니다. (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끝선 기준임)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sup>2</sup>로 표기하였습니다. (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sup>2</sup>X0.3025=평) ※ 발코니는 경량칸막이(비상탈출구)로 시공예정입니다.(일부 타입 제외) ※ 신발장 후면에 전기단자함으로 인해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접수받으며, 동호배정은 주택형내에서 항별·층별·구분 없이 전산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1층 발코니 난간대는 유공판으로 시공됩니다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형 46

40세대

### 주택 면적

주거전용	46,2300 m <sup>2</sup>
주거공용	28,6915 m <sup>2</sup>
지하주차장	16,8978 m <sup>2</sup>
기타공용	3,3667 m <sup>2</sup>
계약면적	95,1860 m <sup>2</sup>

### 실별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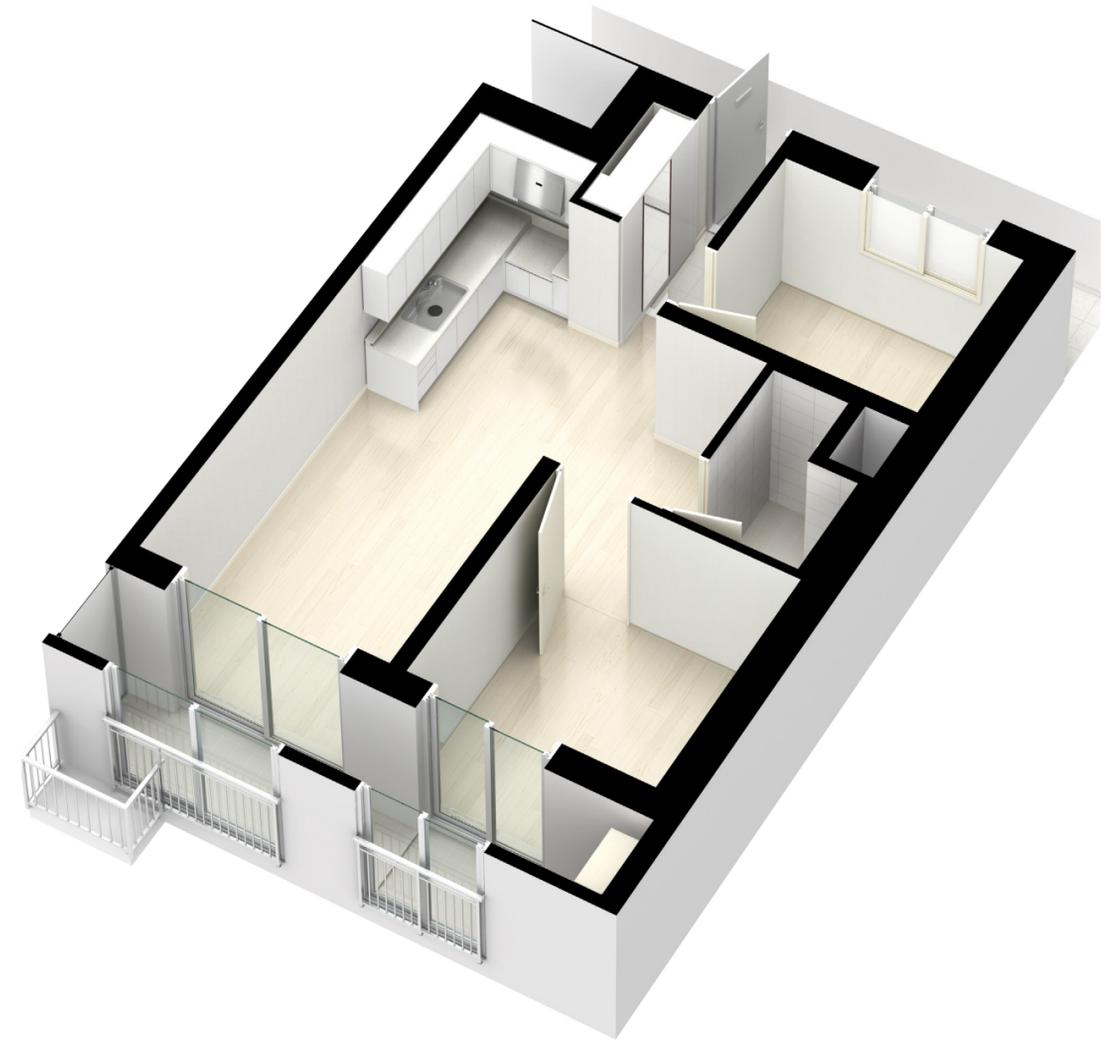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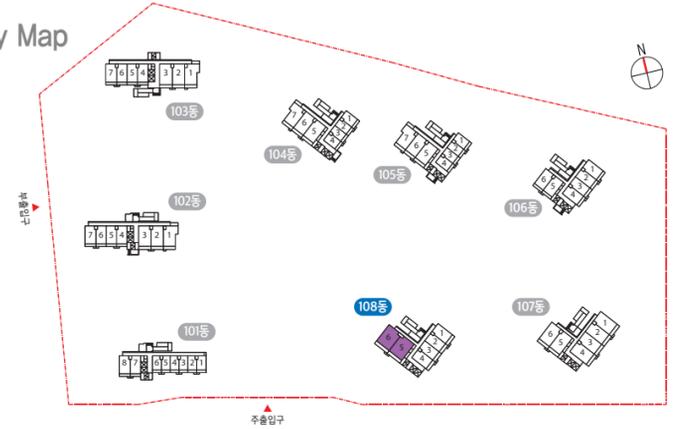
거실	9.51 m <sup>2</sup>
침실 1	9.21 m <sup>2</sup>
침실 2	7.38 m <sup>2</sup>
주방/식당	14.36 m <sup>2</sup>
욕실	3.13 m <sup>2</sup>
현관	2.64 m <sup>2</sup>

### 발코니 면적

발코니계	9.5m <sup>2</sup>
------	-------------------



Key Map



※ 세대평면도 및 아이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평면도 및 아이소는 일부 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치수입니다. (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끝선 기준임)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sup>2</sup>로 표기하였습니다. (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sup>2</sup>X0.3025=평) ※ 발코니는 경량칸막이(비상탈출구)로 시공예정입니다.(일부 타입 제외) ※ 신발장 후면에 전기단자함으로 인해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접수받으며, 동호배정은 주택형내에서 항별·층별·구분 없이 전산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1층 발코니 난간대는 유공판으로 시공됩니다 ※ 현관문 개폐방향은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천안신불당 국민임대주택 주요마감재 내역

구분	품목	26㎡	37㎡ / 46㎡
현관	현관바닥		자기질 타일
	현관벽지		실크벽지
	신발장		HPM (가구전용)
	현관도어록		레버형 도어록
	현관천정지		발포천정지
	현관등		센서등
	걸레받이		인테리어시트마감
거실 / 침실	거실바닥재		룸카펫
	거실벽지		실크벽지
	거실천정지		발포천정지
	거실문짝		목재 미서기문
	거실등		LED
	걸레받이		인테리어시트마감
주방 / 식당	주방바닥		룸카펫
	주방벽지		실크벽지
	주방천정지		발포천정지
	주방가구		HPM (가구전용)
	개수대		언더싱크용
	렌지후드		디럭스형
	주방싱크수전		절수형
	주방가구상판		BMC
	걸레받이		인테리어시트마감
침실1(37㎡·46㎡) 침실2(46㎡)	침실바닥재	-	룸카펫
	침실벽지	-	실크벽지
	침실천정지	-	발포천정지
	침실문짝	-	합성수지(ABS)
	창호	-	합성수지제
욕실	세면기		도기류
	양변기		도기류
	샤워수전		싱글레버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욕실타일		벽 : 도기질타일, 바닥 : 자기질타일
	침실문짝		합성수지(ABS)
발코니	창호		합성수지제
	세탁기수전		세탁기용 가로꼭지 + 물뿌리개 호스
정보통신 (공용부위)	비디오폰		컬러비디오폰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 천안신불당 국민임대주택 아산탕정1-A1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 Contents

15	① 건설위치
	② 임대대상 및 조건
	③ 신청자격
17	④ 공급일정
18	⑤ 신청방법
19	⑥ 입주자선정
23	⑦ 신청서류
26	⑧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27	⑨ 유의사항
30	⑩ 주택성능등급 수준
31	⑪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⑫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⑬ 편의시설 설치 안내
32	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적용된 마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 또는 형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시공되거나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천안신불당 국민임대주택(아산탕정 1-A1BL) 입주자모집(2018.08.30)

- 상기 국민임대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으로만 받습니다. 다만, 기관추천 우선공급대상자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1953.08.30 이전 출생) 또는 장애인 중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 단,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자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번호 : 2018001009 ]

## ◇ 신청대상 및 공급일정 요약 ◇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요약으로써 반드시 본 공고문을 끝까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

아래 신청대상은 청약접수 가능하나, 입주자선정은 대상별 순위 및 배점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신청자격별 입주자선정방법 및 세부 자격기준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우선공급

- 가. 사업지구 철거민
- 나. 만65세이상 고령자, 노부모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국군포로
- 다. 3자녀이상 가구
- 라. 국가유공자등
- 마.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 바.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 사. 신혼부부

#### 2. 일반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70%	참고사항
	3인 이하 가구	3,501,813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4인 가구	4,092,832원이하	
	5인 가구	4,092,832원이하	
	6인 가구	4,354,004원이하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7인 가구	4,638,067원이하	
8인 가구	4,922,131원이하		
자산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4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우선 및 일반공급 청약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반드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한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 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1. 건설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63 (국민임대주택 406호)

##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태	세대당 주택면적(㎡)					공급호수				해당동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주거 약자용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계	계약금	잔금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26	26.48	16.4341	1,9284	9,6788	54,5213	234	30	164	40	106 108	9,423	1,884	7,539	148	철근 콘크	(+)17,000 (-) 5,000	26,423 4,423	63,000 164,660	'19.06 (예정)
37	37.25	23.1183	2,7127	13,6155	76,6965	132	-	120	12	107	18,149	3,629	14,520	209	리트 (벽식)	(+)25,000 (-)12,000	43,149 6,149	84,000 249,000	
46	46.23	28.6915	3,3667	16,8978	95,186	40	-	27	13	108	28,196	5,639	22,557	273	지역 난방	(+)35,000 (-)20,000	63,196 8,196	98,000 339,660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금회 공급에서는 46A형 주택의 건설호수인 42세대 중 가장어린이집으로 공급하는 2세대를 제외한 40세대를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휴한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 · 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8.30)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하며 26형 중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자(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
세대주 신청시	•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단,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인 세대원 • 신청자인 세대원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인 세대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인 세대원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인 세대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신청자인 세대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 · 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성폭력피해자, 등록포로로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1999.08.31 이후 출생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중이 아닌 형제 · 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주(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거나,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야 함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1세대 1주택 신청 · 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1953.08.30 이전 출생)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주거약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구분	구분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 이하 가구	3인 이하 가구	3,501,813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 가구	4인 가구	4,092,832원이하	
	5인 가구	5인 가구	4,092,832원이하	
	6인 가구	6인 가구	4,354,004원이하	
	7인 가구	7인 가구	4,638,067원이하	
8인 가구	8인 가구	4,922,131원이하		
자산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4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업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임대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 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li> <li>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li>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개,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li> </ul>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li> <li>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li>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개,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li> </ul>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구분		산정방법		
금융 자산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li> <li>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li> <li>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총자산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임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li> <li>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ul> </li> <li>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 합계금액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공공기관 대출금</li> <li>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ul>			

**4. 공급일정**

**■ 공급일정**

구분	신청자격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시	우선공급	'18.9.12(수) ~9.13(목) 10:00~16:00	(인터넷) 9.12(수) 10:00~9.13(목) 16:00	2018.10.5(금) 16시 이후	'18.10.15(월) ~10.19(금) (매일 10:00~16:00) 점심시간 제외 (12시~13시)	'19.1.4(금) 16시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계약 2019.1.18(금) 10:00 ~ 1.20(일) 16:00</li> <li>현장 계약 2019.1.22(화) ~1.24(목) (매일 10:00~16:00) 점심시간 제외 (12시~13시)</li> </ul>
	일반공급 / 주거약자	월평균소득 5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순위 '18.9.14(금)</li> <li>2순위 '18.9.17(월)</li> <li>3순위 '18.9.18(화)</li> </ul>	(현장) 10:00~16:00 점심시간 제외 (12시~13시) * 각순위 날짜별 당일만 가능				
장소	LH 아산사업단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접수 (apply.lh.or.kr)</li> <li>현장접수 (노약자,장애인) LH 아산사업단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li> </ul>	LH청약센터 (apply.lh.or.kr)	LH 아산사업단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H청약센터 (apply.lh.or.kr)</li> <li>ARS 1661-77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계약 LH청약센터 (apply.lh.or.kr)</li> <li>현장 계약 LH 아산사업단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li> </ul>	

- \* 우선공급 대상자 중 당해지역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모든 신청서류를 구비하신 후 방문하시어 현장접수를 가능합니다.
-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 후순위 접수여부는 순위별 접수마감일 20:00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합니다.
- \* 월평균소득 50%이하자가 50%초과~70%이하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50%초과~70%이하자로 간주하며, 50%이하자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을 모집하지 않거나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 신청접수가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접수보다 선순위(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에서 마감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무효처리되고 다만,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 경쟁하게 됩니다.

## 5. 신청방법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1953.08.30 이전 출생) 또는 장애인 중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모든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현장방문 신청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방법

**신청방법**  
공인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① 공인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http://www.LH.or.kr))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공인인증서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6.모집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시작일의 오전 10시부터 신청마감일의 오후 4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 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신불당 국민임대주택(아산탕정1-A1) 주택관리번호 : 2018001009 ]

구 분	조회방법
국민은행 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 <a href="http://www.kbstar.com">www.kbstar.com</a> )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증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국민은행외 가입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 <a href="http://www.apt2you.com">www.apt2you.com</a>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 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화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짜지 지정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 모바일 신청방법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 ①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아이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6. 입주자선정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배점호수

공급 형태	일반 공급	주거 약자용 주택 공급	우선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가목	나목																	
계	사업 지구 철거민	만65세 이상 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파독 근로자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중소 기업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 가족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남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군포로	3자녀 이상 가구	국가 유공자 등	영구 임대 입주자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신혼 부부					
26	40	30	164	27	6	-	5	1	1	3	3	2	7	4	12	20	8	4	61		
37	12	-	120	10	5	4	10	2	2	-	-	5	4	3	13	17	3	3	39		
46	13	-	27	-	-	3	-	-	-	-	-	-	-	-	12	-	-	-	12		

### ■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입주자선정 방법  
1.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 이하	2,501,295원 이하	3,501,813원 이하
4인	2,923,452원 이하	4,092,832원 이하
5인	2,923,452원 이하	4,092,832원 이하
6인	3,110,003원 이하	4,354,004원 이하
7인	3,312,905원 이하	4,638,067원 이하
8인	3,515,808원 이하	4,922,131원 이하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정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평택시, 안성시, 충남 당진시, 공주시, 예산군, 충북 청주시, 진천군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거주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08.3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일반공급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순위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합산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주거약자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며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 불가합니다.

■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 되므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서류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대 상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과거 근무경력(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할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자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 ⑩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을)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남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⑯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⑱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3자녀 이상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 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b>신혼부부</b>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b>예비신혼부부</b>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②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①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가구원수	3점	2점	1점
	① 가구소득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②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	3명 이상	2명	1명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 (천안시·아산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④ 청약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⑤ 혼인기간	3년 이내	3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이내	
유의사항	* ③ <b>청정남도 천안시·아산시 연속 거주기간</b> 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천안시 및 아산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b>천안시 및 아산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b>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 혼인기간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b>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경우 각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모두 포함), ③ 신청자가 속하게 될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및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b>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 신청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기관추천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장애인 우선공급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장애등급 높은자	→		배점합산
신혼부부 우선공급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	순위	→		배점합산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점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장애인,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 1999.08.31 이후 출생자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중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 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li> <li>※ 다음 사람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자립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수급자 등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li>「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li> <li>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중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li> </ul>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⑤, ⑥, ⑨의 가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세대 분리되어 있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③ 장애등급	중증장애인	-	그 외
*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구 분	3점	2점	1점
④ 사회취약계층(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li> <li>「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li> </ul>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① 부양가족수는 위 "부양가족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가 적용됩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의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부과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10%이하	10%초과 30%이하	30%초과
임대조건 할증비율	10%	20%	40%

7. 신청서류(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하여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전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동의서 및 확인서 제출(내청약센터 공고문 첨부 서식)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li> <li>*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li> </ul>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li> <li>※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li> </ul>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li> <li>*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li> <li>*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li> <li>*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li> <li>*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li> <li>•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li> </ul>	1통

■ 필수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li> <li>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li> <li>*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ul>	1통
주민등록표초본	<p>&lt;아래 해당자만 제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 및 아산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천안시 및 아산시에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li> <li>•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li> <li>→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li> </ul>	1통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li> <li>*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li> </ul>	1통

■ 기타 보완서류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부수
혼인관계 관련서류	<p><b>&lt;신혼부부 우선공급에 신청하려는 경우&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li> <li>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li> <li><b>&lt;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gt;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공통 :</b> 자녀의 기본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li> </ul>	주민센터	1통
임신진단서	<p><b>&lt;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 · 3자녀이상 우선공급, 배정의 부양가족수 ·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li> </ul>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1통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	1통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신청 접수증 사본	<p><b>&lt;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제출&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li> <li>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 외국인 등록 신청 접수증 사본</li> </ul>	출입국 관리사무소	1통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아래(■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를 참조하시어 배점서류 등이 누락되지않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신청 및 서류제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구비서류
혼인관계 관련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li> <li>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li> </ol>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li> <li>본인(신청자) 도장</li> <li>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li> </ol>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li> <li>(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li> <li>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li> </ol>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우선공급 대상자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에 신청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할 기간이 5년 이상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3년 이상)인 자 *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중소벤처 기업청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b>*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	<b>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b> <b>발급처 :</b> - 기간제 · 파견 근로자 →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⑦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단, 이혼 · 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시,군,구청
	⑨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항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우선공급 대상자	⑩ 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 · 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⑫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계약사실증명원	해당관리소	
	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⑭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시장 등의 추천서	시,군,구청	
	⑮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공통	자녀의 기본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센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⑰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⑱ 남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남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이산가족과)	
	⑳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입소확인서	시,군,구청	
	㉑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㉒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출입국사실증명서 * 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개인별 별도 통지) 드릴 수 있으며 요청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파독근로자 우선공급자격을 인정함	주민센터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7.10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li> <li>'12.7.10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li> </ul>		
	⑤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 · 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㉑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㉒ 차상위계층(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의 해당 순위(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한 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①~③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단, 이혼 · 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⑥ 중소기업업체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기소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⑦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건설근로자 공제회
	⑧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대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독립)유공자 등 확인원	지방보훈청
	-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내 소득인정액 선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주민센터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카목 해당 자) 확인서	관련기관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센터
	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 우선공급 대상자 중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해당기관 추천에 따르므로 해당 입증서류 제출은 불필요 합니다. (단, 동의서 및 기본서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항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 계약안내

- 온라인 계약 [계약기간 : 2019.01.18.(금) 10:00 ~ 01.20.(일) 16: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청약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절차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계약기간 내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단, 주말인 경우 10:00~16:00)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하셨더라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출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반드시 프린터 테스트 후 출력하여야 하며, 계약서 인쇄버튼클릭 후 개인 프린터상태 및 네트워크 사정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도 1회 출력으로 간주합니다.

### ●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2019.01.22.(화) ~ 2018.01.24.(목) 10:00~16:00]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li> <li>●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li> <li>●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li> <li>●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li> <li>●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li> </ul>

## 9.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li> <li>●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li> <li>●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li>●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은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th> <th>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00%</td> <td>11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30%초과 50%이하</td> <td>120%</td> <td>140%</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 colspan="2">140%</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td> </tr> </tbody> </table>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li> <li>●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li> <li>●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li> </ul>																						
공급일정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대상자별 예비입주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li> <li>●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 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li> </ul>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li> <li>●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li> </ul>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li> <li>●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li> <li>●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li> <li>•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li> <l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신·분娩기록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li> <li>•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처음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li> <li>•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에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가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우리카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li> <li>•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li>•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li> <li>•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li> <li>•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li> </ul>
지구 및 단지여건	<p>※ 계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 조정될수 있습니다.</li> <li>•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별도 안내합니다.</li> <li>• 본 지구는 국민임대 408호, 행복주택 740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본 지구 북측(한들문화센터 연결)로 20.0m 도로가 개설 예정되어 있으며 공사 추진 과정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지구 북측(H:9.0m, L:304m)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li> <li>• 본 지구의 남측은 공동주택, 서측은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li> <li>•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부대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근린공원에 산책로로 인해 일부 세대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li> <li>•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체에 대한 다지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 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li> <li>• 실대처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 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 지분 정리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도, 단지내 도로선형, 조정(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등), 동·호수 별 위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이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시공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li> <li>•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li> <li>• 현장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합니다.</li> <li>• 단지 경계 녹지면에 단지 전기인입용 한전시설물(PAD S/W)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지구 및 단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삿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사다리차 이용불가시 엘리베이터 이용)</li> <li>•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일부저층 세대는 보안등 불빛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내 일부타입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 101동 8호세대 측벽에서 약3M 거리에 전기실 환기설비 등을 위한 D/A가 설치되어, 다소의 소음 및 송풍에 의한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105동 2호세대 발코니 외방창호에서 약8M 거리에 지하주차장 환기설비 등을 위한 D/A가 설치되어, 다소의 소음 및 송풍에 의한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조경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규격, 수종, 위치 등)및 시설물(재료, 형태, 위치 등)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옥외쓰레기수거함 8개소, 자전거 보관대(39대)가 설치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은 849대(지하주차장 425대, 지상주차장 424대, 근린생활시설 3대 포함)로 되어 있습니다.</li> <li>•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자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엘리베이터는 지하주차장용, 아파트용으로 분리되어 있어 아파트 세대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li> <li>• 세대 내 도시가스 배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팜플렛 상의 면적을 표현한 치수는 설계상의 위치 및 숫자로서 안목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펌프실, 발전기실, 열교환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열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li> <li>• 101동 측면, 서측 산책로에 근접하여 발전기실 송풍 및 배연등을 위한 D/A가 설치되며, 다소의 소음 및 배연에 의한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마감재 및 발코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li> <li>•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임대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수준을 정밀 확인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마감재 내역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으로 팜플렛, 현장사무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홍통 및 드레인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시 팜플렛, 현장사무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열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임대안내책자(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관련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li> <li>•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가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인쇄물(임대안내책자, 공공간지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등)상의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전실의 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발코니에는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li> <li>• 방범시설은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li> <li>• 생활습관 변화(관상용식품,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li> <li>• 최상층은 평지붕이며 콘크리트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li> <li>•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 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공용부위 마감재의 사양, 색상 및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li> <li>•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삿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li> <li>•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공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li> <li>• 세대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연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됩니다.</li> </ul>

### 10. 주택성능등급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 공공주택성능등급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평가등급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화장실 급배수소음	★★★
		경계소음	★
		외부소음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외소음도
구조관련 등급	수리용이성	가변성	★★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환경관련 등급	조경	생태면적율	★★
		자연지반 녹지율	★★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음실물 쓰레기 저감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재활용유한친환경인증제품사용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우수 이용	★★★★
	에너지 절약	에너지성능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오존층보호를위하여특정물질사용금지	★★	
생활환경 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공간의 조성수준		★★
	보행자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중심및지역중심과단지중심간거리	★★★★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방법안전	방법안전콘텐츠	★
생활환경 등급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문서및지침제공의타당성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화재·소방 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아산탕정 1-A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314-82-13491)	건축 토목 소방	남양건설(주) 제일건설(주)	기계설비 건설공제조합	(주)한동엔지니어링 (소방감리) *감리금액 : 286,000천원
		기계	(주)소림기계설비		
		전기	(주)성일		
		통신	(주)대건시스템즈		
		조경	청인건설(주)		
		가스	(주)용명이엔지		

### 1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13.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기본품목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노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욕실	수건걸이 1.0~1.2m 높이에 설치	3급 이상의 지체·노병변장애인
선택품목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의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노출배관으로 시공가능)	지체·노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조명 밝기 600~900럭스(lux)	청각장애인
	부엌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지체·노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을 경사로	지체·뇌병변 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주방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동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총자산	일반 자산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자산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기타 자산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금융자산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팸플렛 배부처	LH대전충남 아산사업단 1층(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
임대문의 및 공급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li> <li>• 천안신불당 행복주택상담소 : 041-537-2774</li> <li>• 인터넷 - 마이홈포털 (<a href="http://www.myhome.go.kr">http://www.myhome.go.kr</a>) - 천안신불당 국민임대주택(아산탕정1-A1BL) 사이트(<a href="http://www.buldanga1.co.kr">http://www.buldanga1.co.kr</a>) - LH 홈페이지 (<a href="http://www.lh.or.kr">http://www.lh.or.kr</a>)</li> </ul>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LH 청약센터(<a href="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a>)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li> <li>•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li> </ul>

2018. 08. 30

**LH아산사업단 오시는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



문의 | **1600-1004 / 041)537-2774**

- LH홈페이지 [www.LH.or.kr](http://www.LH.or.kr)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스마트폰으로 좌측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천안신불당 국민임대주택(아산당정1-A1블록)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buldanga1.co.kr](http://www.buldanga1.co.kr)

